##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정성국・이헌승・백종헌

곽규택 · 김희정 · 김대식

이성권 · 서지영 · 서범수

박수영 · 서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 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단서 신설).

또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 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자 함(안 제17조제5호).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 및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 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

제17조제5호 중 "아동의"를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로 한다.

제28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 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정보 삭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7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u>&lt;단</u>	<u>다</u>
<u>서 신설&gt;</u>	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
	3제1항 및 「초・중등교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
	<u>한다.</u>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아동의</u> 정신건강 및 발달에	5.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 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11.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6. ~ 11. (현행과 같음) 및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 음)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수사가 무혐의 처분 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 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정보 삭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